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09. 07(화)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4. 12. 21(화)
- 다. 상정일자 : 2004. 12. 23(목)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2.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개정 2002. 1.19)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03. 4. 1) 시행에 따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 개정

-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상향조정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판매한 자.

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규정 신설

가.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상향 조정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상향조정 및 부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금연구역 지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설치·판매하는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 법 28조에 의한 보고의무위반과 허위보고를 비롯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2002년 1월에 있었던 것에 비하여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지 않았나 검토되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